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기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965
----------	-------

발의연월일 : 2026. 1. 12.

발 의 자 : 김기현 · 강명구 · 이만희
강대식 · 김미애 · 우재준
조정훈 · 백종현 · 박성훈
김소희 · 임이자 · 박충권
서천호 · 김장겸 · 박성민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아동수당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국외에 거주하면서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것을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보임.

그러나 우리나라 국적의 아동이 해외에 체류한다는 사유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고, 특히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보호자가 국내에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가 「소득세법」상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국외 체류기간에 관계 없이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1항제1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전단 중 “지속되는 경우”를 “지속되는 경우(다만,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가 「소득세법」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전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①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 지한다.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① ----- ----- ----- ----- ----- ----- ----- --.
1.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u>지속되는 경우</u> . 이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당시부터 국외에 체류 중인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은 해당 아동이 국외로 출국한 날(해당 아동이 국외에서 출 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 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기산 (起算)한다.	1. ----- ----- <u>지속되는 경우(다</u> <u>만,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u> <u>보호자가 「소득세법」 제2조</u> <u>제1항제1호 또는 같은 항 제2</u> <u>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u>경우는 제외한다).</u> ----- ----- ----- ----- ----- ----- -----.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